

JS 한마음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하 보호자라고 한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18인으로 한다.(2016. 9. 26 개정)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4등급 또는 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6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증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기관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8조 【계약자 권리】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또는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비용 청구의 권리가 있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을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외부음식의 반입에 관하여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9조 【계약자 의무】

이용자 와 기관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 ①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②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⑤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④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4등급
요 양 급 여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고시 비용	고시 비용	고시 비용
비 급 여	식재료비 · 간식비			
	병원비 · 약제비			
	상급침실 이용료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A.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a)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b)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B.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다음의 요건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21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